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개 사업 ○○○개사

사업기간 : 2022. 2. 1 ~ 2023. 1. 31* (12개월)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 2)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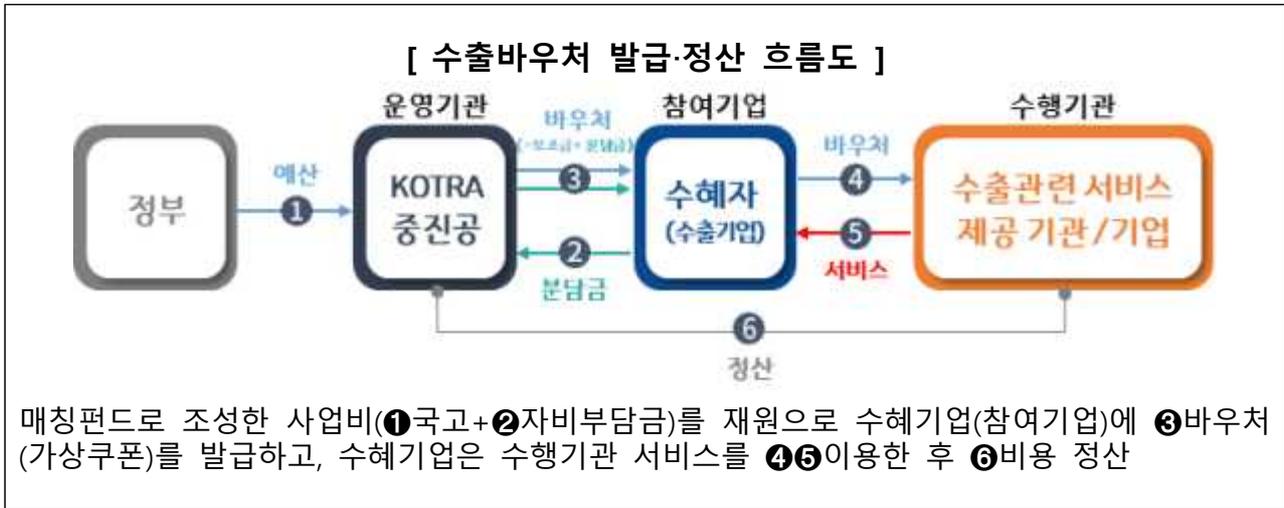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7,0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6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 '21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기존 참여기업 중 '21년 협약기간이 '22.1.31 종료되는 기업은 '22년 사업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타 조건 부합 시 신청 가능
-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2년 모집 세부사업 요약(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5개 사업)

세부사업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국고 보조율
그린 선도기업 육성 * '22년 신규	[확대] '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발전] '18-20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확대] 3,000만원, 5,000만원 [발전] 6,000만원, 1억원	(중소) 70% (중견) 50%
중견 글로벌 지원	[내수중견] 수출비중 10% 미만 또는 수출액 1천만불 미만의 중견·중견후보 ·예비중견기업 [Jumping]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중견글로벌] 중견기업·WC300/WCPlus선정기업 [Post]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내수] 최대 1억원 [Jumping] 최대 1억원 [중견] (중소) 최대 1.3억원 (중견) 최대 2억원 [Post] 최대 2억원	30~70% *자원요건별 상이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확대] '18-20년 중 1개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소부장기업 [발전] '18-20년 평균수출액 100만불 이상 소부장기업	[확대] 5,000만원 (최대 1억원) [발전] 6,000만원 (최대 1억원)	(중소) 70% (중견) 5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18-20년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이면서 '18-20년 평균수출액 50만불 이상인 소비재기업	[통합] 5,500만원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18-20년 평균매출액 1조원 이하의 중소·중견 서비스기업	[통합] 5,000만원	

□ 우대사항(공통)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 -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 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인증명	주관기관	세부내용
녹색인증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수소전문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친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한국품질재단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로하스(LOHAS)	한국표준협회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저탄소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관련 증빙 제출 필요)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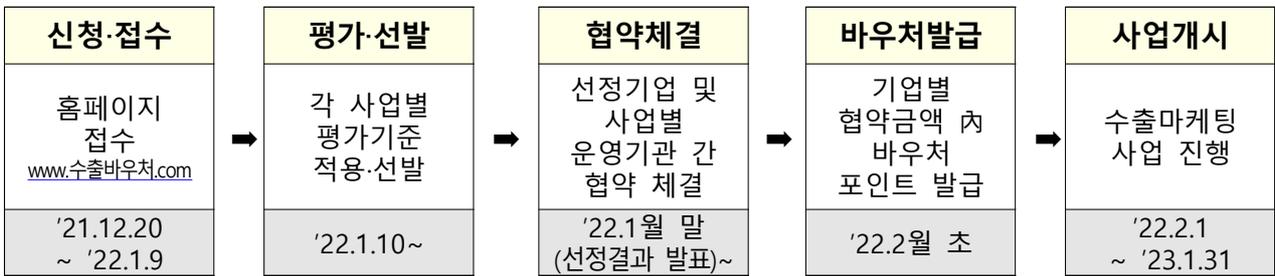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 신청기간 : '21. 12. 20(월) ~ '22. 1. 9(일) 24시 까지

- 신청서류 :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 추진 일정은 세부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 동일 공고 내에서 최대 2개 사업 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사업별 유의사항 참조)
-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
30% 초과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 '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최대 2회 분납** 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4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단,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은 최대 6개월 내 3회 분납 가능)
-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것을 수출 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he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사업별 상이)
-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참조

4.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02-3460-7238, 7246, 7242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070-4866-5288~9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시 스 템	그린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2
	시스템 이용 관련	02-3460-3427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수출실적증명 발급)	02-3771-1100, 1155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0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산· 시험	특허·지재산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산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산/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 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 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6. 세부사업별 모집 요강

가. 그린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재생에너지ⁱ⁾, 수소ⁱⁱ⁾, 모빌리티ⁱⁱⁱ⁾, 온실가스 배출 저감^{iv)}, 에너지효율^{v)},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vi)},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vii)}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단,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i)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ii)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iii)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iv)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v)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vi)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vii)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지원요건 : (1) 확대, (2) 발전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유의사항 :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미 타 세부사업에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	(1) 확대		(2) 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최근 3개년('18~'20)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최근 3개년('18~'20)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지원규모	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70%/2,1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70%/3,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70%/4,2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70%/7,000만원 (중견)50%/5,000만원
자비 부담율 및 금액	(중소)30%/9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30%/1,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30%/1,8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30%/3,000만원 (중견)50%/5,000만원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 시스템 **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재무제표증명원('18~'20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필수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필수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 실적증명서('18~'20년)	선택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 URL : www.kita.net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18~'20년)	선택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입금증빙 * 위의 무역협회 무체물수출실적증명서 없을 시
기타 :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① 그린 관련 인증 (공고문 p.3 참조) ②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③ 산업융합선도기업 ④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⑤ 혁신조달기업 ⑥ K-ESG 시범평가 우수기업 ⑦ 고용창출 우수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주요 심사내용

구분	(1) 확대	(2) 발전
심사기준	·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 평가(계량) : 서류심사 · 2차 평가(비계량) : 서류심사 또는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한 발표심사 * 2차 발표심사 대상기업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신청 시 담당자 정보 정확히 기재 요망) · 1, 2차 평가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	

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기업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해외 마케팅사업 전개
-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의 3각 체계를 구축하고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여 동 시장에서 수행할 연간 마케팅 계획의 수립·추진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중 상기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요건 : (1) 내수중견, (2) Jumping 중견글로벌, (3) 중견글로벌, (4) Post 중견글로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중견기업, 월드클래스300(이하 WC300)·월드클래스플러스(이하 WC Plus) 지정 기업,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등(세부내용은 아래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참조)

** 가입시점 기준 모든 지원요건에 대해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은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내수중견'은 한시적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어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Jumping 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등 다른 유형으로 전환 가능
- 'Jumping 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은 각각 5회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Post 중견글로벌'에 참가하여 3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세 단계 도합 참가기간 8회 초과 불가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	내수중견	Jumping중견글로벌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
사업목적	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원요건	① 중견기업 ② 중견후보기업 ③ 예비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수출액 10% 미만 기업 우대	① 중견후보기업 ② 예비중견기업 ※ 기존 Pre 중견글로벌 업체이면서 상기요건 충족하는 경우, Jumping 중견글로벌 지원	① WC300, WC Plus ② 중견기업 (중견유예포함)	①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3회
지원규모	OO개사	OOO개사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 해외진출 멘토링 지원(전담위원 배정) · 바이어발굴 등 진출 초기단계 서비스 제공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7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 발급액* (㉠+㉡)	1억원	1억원	(중소) 1.3억원 / (중견) 2억원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 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지원요건별 용어 정의

- 예비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수출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 중견후보기업 : <붙임 1>의 '업종별 중견 후보기업 지표'의 매출액 이상인 중소기업
- 중견유예기업 : <붙임 2>의 '업종별 중견기업 지표'의 매출액 이상이며 중소기업 자격 유지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 '중견글로벌' 5회 참가한 기업
- WC300 / WC Plus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C300 / WC Plus 사업 선정 기업

○ 세부유형 선택 시 주의사항

- * 일반 중소기업 : 내수중견, Jumping 중견글로벌 중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단계 택 1
- * WC300 지정 기업 중 중소기업 : Jumping 중견글로벌 또는 중견글로벌 지원
 - 최초 참가하거나 Pre중견으로 참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Jumping 중견글로벌에 지원
 - 이전에 중견글로벌로 참가한 경우 : 중견글로벌(최대 1.3억원)에 지원
- * 중견 유예기업 : 중견글로벌(최대 1.3억원)에 지원

□ 신청 시 주의사항

- '22년에도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사업 계획의 취소·연기에 대비한 대체사업* 계획도 반드시 포함
-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 입점, 광고, 영문홈페이지 개발, 웨비나(Webinar)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 시스템 **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표준재무제표증명원('18~'20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필수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 실적 증명서('18~'20년)	선택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 URL : www.kita.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18~'20년)	선택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① WC300, WC Plus 선정기업 ②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③ ATC(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 ④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⑤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⑥ 고용창출 우수기업 ⑦ 그린 관련 인증 (공고문 p.3 참조) ⑧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정지역</th> <th>지정산업</th> <th>지정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전북 군산시</td> <td>자동차</td> <td>'18년 4월</td> </tr> <tr> <td>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등구</td> <td>조선업</td> <td>'18년 5월</td> </tr> </tbody> </table>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등구	조선업	'18년 5월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등구	조선업	'18년 5월									
*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주요 심사내용

구분	내용
심사기준	· (계량) 최근 3년간('18~'20년) 매출액, 고용인원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내수) 유선심사, 선정평가위원회 평가(2차 서류심사) - (Jumping·중견글로벌·Post) 선정평가위원회 평가(2차 서류심사)

<붙임 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견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비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발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 정의]

-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소재·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조(소재·부품·장비의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 지원요건 : (1) 확대, (2) 발전 유형으로 구분

* 아래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참조

- 유의사항 : 동일 사업 내 단계별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발전) 단계는 신규 신청 또는 (확대) 단계 2회 선정(참여) 이력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	(1) 확대	(2) 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② 최근 3개년('18~'20년) 중 1개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② 최근 3개년('18~'20년)* 평균 수출액 100만불 이상
지원규모	OOO개사 내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 지원 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 국가 선정 지원 등 · 디지털 현장실사 등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대응 신규 서비스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5,000만원 (최대 10,000만원)**	6,000만원 (최대 10,000만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기업) 70% / 3,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중소기업) 70% / 4,2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자비 부담율 및 금액	(중소기업) 30% / 1,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중소기업) 30% / 1,8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 기업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내 평균 수출액 적용

** 상반기 바우처 조기 소진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별도 조사) 누계 1억원까지 증액 지원 (미소진 시 제재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 시스템 **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표준재무제표증명원('18~'20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필수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또는 브로슈어)	필수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① 국제공동 R&D 수행기업 ②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③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④ 뿌리기업 확인서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 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 ⑥ K-ESG 시범평가 우수기업 ⑦ 고용창출 우수기업 ⑧ 그린 관련 인증 (공고문 p.3 참조) ⑨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지정지역</th> <th>지정산업</th> <th>지정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전북 군산시</td> <td>자동차</td> <td>'18년 4월</td> </tr> <tr> <td>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td> <td>조선업</td> <td>'18년 5월</td> </tr> </tbody> </table> *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 뿌리기업 확인서 등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신청기간 내 제출 불가능한 서류는 접수증 등으로 갈음(업로드)하되, '22.1.21限 최종서류가 발급·제출된 건만 인정
(제출처 : g1yun@kotra.or.kr)

□ 주요 심사내용

구분	(1) 확대	(2) 발전
심사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	
심사방법	· 1차 평가(계량) : 서류심사 · 2차 평가(비계량) : 방문 또는 전화면접(필요 시) * 2차 평가는 1차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진행	
유의사항	· 각 단계별 최대 2년 참여 가능, 이전 2회 이상 참여기업은 신청불가 · 불가피하게 취소, 연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취소에 대비한 대체사업 계획도 반드시 포함	

라.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소비재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육성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소비재 제조, 중소·중견기업

* 소비재 :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제외대상 : 무역상사

○ 지원요건 : 2개 요건 모두 충족

① 최근 3개년('18~'20)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개년('18~'20) 평균 수출액 50만불 이상

* 자사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 유의사항 :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미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	내용
사업목적	소비재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육성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2개) 충족 ① 최근 3개년('18~'20)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개년('18~'20) 평균수출액 50만불 이상 * 자사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지원규모	○○개사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 인증,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국제운송 등 13개 분야 수출 지원 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5,500만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기업) 70% / 3,85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
자비 부담율 및 금액	(중소기업) 30% / 1,65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로드맵)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 시스템 **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재무제표증명원('18~'20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선택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영문 /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선택	-
인증 / 수상 증빙서류	선택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① 고용창출 우수기업 * 중앙·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②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선정증 사본 또는 선정 확인서 ③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수상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상장 사본 또는 수상 확인서 ④ 산업융합선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서 ⑤ 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⑥ 규제샌드박스 ⑦ 그린 관련 인증 (공고문 p.3 참조)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주요 심사내용

구분	내용
심사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 평가(계량) : 서류심사 · 2차 평가(비계량) : 외부 선정위원회 평가, 기업발표 심사 * 2차 평가는 1차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진행 ** 2차 평가일정은 개별 통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 시,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되므로 제출 시 정확한 정보 기재 요망)

마.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지원목적 :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서비스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는 아래 상세 지원분야 및 업종 참조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원 분야 및 업종]

- ① 분야 : 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전자출판, 캐릭터), 에듀테크(이러닝, 학원, 교재), 프랜차이즈(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기타서비스(AI, 데이터기반, 핀테크, 생활편의, 산업자동화 등)
- ② 업종 : 교육서비스업, 출판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시스템SW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게임 SW개발 및 공급,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

○ 지원요건 : 최근 3개년('18~'20) 평균 매출액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 유의사항 :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미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 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	바우처 발행액	국고지원	기업분담금	국고보조율
중소기업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70%
중견기업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50%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브로슈어)	필수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 실적증명서('18~'20년)	선택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 URL : www.kita.net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18~'20년)	선택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입금증빙 * 위의 무역협회 무체물수출실적증명서 없을 시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p>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p> <p>①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기업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p> <p>② 사회적경제기업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p> <p>③ 소상공인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p> <p>④ 고용창출 우수기업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p> <p>⑤ 산업융합선도기업 * 산업부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서 제출</p> <p>⑥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별도 증빙서류 없음</p> <p>⑦ 그린 관련 인증 (공고문 p.3 참조)</p>

□ 주요 심사내용

구분	내용
심사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평가(계량) : 서류심사 · 2차 평가(비계량) : 외부 선정위원회 평가, 기업발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평가는 1차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진행 · 최종 합격자는 1, 2차 합산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청 상황에 따라 서비스 분야별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 * 신청화면에서 '세부 선정기준표' 다운로드 가능